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:별 첨

4. 검 토 의 견: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1월 28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춘 용

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8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 조정교부금 산정시 적용되는 각 경비의 측정항목을 사업예산과 연계하여 일부 개선하고, 사회복지 수요 측정항목을 세분화하여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의합리성,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(안 별표 1 및 별표 2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각 경비의 측정항목, 측정단위, 수치 산정 기준 등을 사업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일부개선하고,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인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분야 세항을 1개에서 5개로 추가 반영 하였으며,

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